

부산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509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5. 25.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31544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3. 6. 체결된 채권양도 · 양수계약을 7,157,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7,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7,157,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7,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2. 11. 10.자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예비적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일괄하여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서 2019. 3. 6. 수표 3,200만 원,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현금 8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청산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소외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소비액 상당인 8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중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소외 회사의 권리불행사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성과보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5. 8. 21. 폐업하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간주된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소외 회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전채권인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성립 및 범위

가)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의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4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나)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재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9. 3.경 정산합의를 하면서 그 정산액 중 일부인 8,000,000원을 2019. 3. 6.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던 점, ② 피고는 그다음 날인 2019. 3. 7. 위 8,000,000원 중 6,5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500,000원도 근접한 시일 내에 다른 돈과 혼재된 상태에서 모두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회계처리를 거쳤다가나 변제, 상계 등 어떠한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위 정산합의에 근거하여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돈 외에도 수표 82,000,000원과 현금 8,2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수표 및 현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채권액 8,000,000원을 추심한 후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소비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는 대표청산인으로서 경영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상법 제54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8,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0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고 있는 6,000,000원 부분은 2019. 3. 7. 소비되었으므로, 그날이 불법행위일이 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2. 11. 10.자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2. 11.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권액이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금액은 앞서 본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하고 있는 돈보다 크므로¹⁾,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손해배상액 6,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7.부터 2022. 11. 10.자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2.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²⁾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3. 6.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일은 2019. 3.

7.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위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아름, 판사 이순혁

1) 원금(6,000,000원)과 2022. 11. 16.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서로 같으나, 2019. 3. 6.부터 2022. 11.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비교해보면 2019. 11. 28.부터 2022. 11. 15.까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는 성과보수금 채권액의 액수가 더 크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기각하는 이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2. 11. 10.자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적용한다.